

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9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9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9. 30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장 김진관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지역발전연구센터 해산으로 조례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, 실효성이 없어진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오현문)
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9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9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9. 30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안전정책과장 신광호)

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의용소방대법 제16조(활동비 지원)에 근거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의용소방대 화재예방보조 임무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 등 지원이 가능함.
-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3조(지원범위)에 의용소방대의 화재 예방보조 임무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포함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의 화재 현장 출동 및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지원 신설(안 제3조제1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오현문)

- 의용소방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재예방임무 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포함하여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9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9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9. 30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이호경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 정비하여,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심의회 업무에 대한 상위법령 중복 및 불일치 조항 삭제
(안 제5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
(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-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및 용어 정비
(안 제12조제1항 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오현문)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9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9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9. 30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이호경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.

나. 주요내용

○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6조의2)

○ 중요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6조)

○ 소모품 기준 변경(안 별표 1)

- 소모품 취득단가를 “3만원 이하” 에서 “50만원 미만” 으로 상향 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오현문)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